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은행의 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3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은행의 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5. 16.
3. 회 부 일: 2025.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 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 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

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은행의 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

□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 및 공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② (생략) <u><신설></u>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예금금리”라 한다)과 각종 대출 등 여신 업무에 대한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대출금리”라 한다) 및 그 차이(이하 이 조에서 “예대금리차”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개월마다 공시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u><신설></u>	⑤ 제3항에 따른 예대금리차 산정 방법 및 공시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예대금리차 등 공시

□ 현재 은행의 금리 공시는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른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¹⁾, 실제적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체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비교 공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의 매월 공시 의무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실제 제도의 변경은 없으나 금리 공시제도의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의 실익 여부 및 입법의 경직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음

1) 「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 이자(대출가산금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⑨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할 내용 및 방법,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방법,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형식,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시행세칙)

제70조의6(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대해 공시할 내용)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참고자료 별책서식 부분 참조)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2조의2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전체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고 있고, 위반 시 행정제재,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가 있으므로 「은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 이해관계자인 은행연합회는 이미 개정안과 같이 매월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낮고, 공시제도가 수시로 개선²⁾되는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경우 매번 시행령 개정이 요구되어 정책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은행 금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강화

-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하락하지만 예·적금 금리 하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인하됨에 따라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은행의 이자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

-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추이를 보면, 최근 1년간 가계 예대금리

2) 2022. 7.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공시주기 단축(3개월→1개월), 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은행 자체등급→CB사 신용점수), 은행별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 평균금리 비교 공시
2023. 7.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외에 '잔액' 기준 예대금리도 추가로 공시, 전세대출금리도 공시

차이가 은행별로 최소 1.5배에서 최대 거의 3배까지 확대되었으며,
2024년 시중 5대 은행의 이자이익도 38조 9,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5% 증가하였음.

< 시중 5대 은행의 최근 1년 예대금리차 변화 추이 >

(단위: %, %p)

은행	구분	2024 5.	2024 6.	2024 7.	2024 8.	2024 9.	2024 10.	2024 11.	2024 12.	2025. 1.	2025. 2.	2025. 3.	2025. 4.	2025. 5.
NH 농협 은행	가계 대출금리	4.14	4.08	4.13	4.26	4.24	4.36	4.54	4.39	4.42	4.31	4.25	3.99	3.80
	저축성 수신금리	3.36	3.40	3.28	3.17	3.19	3.16	3.27	3.06	2.96	2.84	2.70	2.61	2.59
	가계 예대금리	0.78	0.68	0.85	1.09	1.05	1.20	1.27	1.33	1.46	1.47	1.55	1.38	1.21
신한 은행	가계 대출금리	4.28	3.96	3.69	3.69	3.96	4.45	4.41	4.25	4.47	4.39	4.37	4.21	4.10
	저축성 수신금리	3.64	3.55	3.49	3.45	3.43	3.44	3.41	3.27	3.05	2.99	2.86	2.70	2.65
	가계 예대금리	0.64	0.41	0.20	0.24	0.53	1.01	1.00	0.98	1.42	1.40	1.51	1.51	1.45
우리 은행	가계 대출금리	4.43	4.05	3.60	3.68	3.91	4.26	4.42	4.38	4.46	4.28	4.22	4.04	3.92
	저축성 수신금리	3.60	3.55	3.45	3.45	3.48	3.45	3.40	3.22	3.12	2.98	2.84	2.69	2.67
	가계 예대금리	0.83	0.50	0.15	0.23	0.43	0.81	1.02	1.16	1.34	1.30	1.38	1.35	1.25
하나 은행	가계 대출금리	4.12	4.08	4.00	3.97	4.15	4.42	4.57	4.43	4.44	4.39	4.32	4.12	4.03
	저축성 수신금리	3.64	3.56	3.47	3.39	3.47	3.44	3.38	3.31	3.07	2.99	2.89	2.75	2.64
	가계 예대금리	0.48	0.52	0.53	0.58	0.68	0.98	1.19	1.12	1.37	1.40	1.43	1.37	1.39
KB 국민 은행	가계 대출금리	4.32	3.99	3.89	4.09	4.38	4.59	4.63	4.52	4.41	4.32	4.33	4.16	4.02
	저축성 수신금리	3.55	3.53	3.45	3.38	3.40	3.41	3.36	3.27	3.12	2.99	2.84	2.74	2.64
	가계 예대금리	0.77	0.46	0.44	0.71	0.98	1.18	1.27	1.25	1.29	1.33	1.49	1.42	1.38

주: 정책저금용 제외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이에 개정안은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검토를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은행 금리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대금리차 증가

로 인해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금리 산정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은 단기적으로 일시적 금리
인하 등의 효과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 왜곡, 은행 경영
자율성 훼손,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는 금리는 기본적
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금리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자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발췌

<별책서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양식)

(단위 : %, %p)

은행	구분	연월(YY.MM)
	평균대출금리(B)	
	가계대출금리(C)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금리(D)	
	기업대출금리(E)	
	저축성수신금리(신규취급기준, A) 총수신금리(잔액기준, A)	
	정기예금 금리(1년)	
	가계 정기예금 금리(1년)	
	정기예금 금리(1년 미만)	
	예대금리차(평균) (B-A)	
	예대금리차(가계) (C-A)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D-A)	
	은행별 특수성	

- 주1) 각 구분별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예금은행 금리조사표' 작성방식과 항목에 따라 작성
- 2) 각 금리는 공시하는 월의 직전월 신규기준 평균금리(한국은행 산출방식에 따라 가중평균)
- 3) 저축성수신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등 기타를 제외한 일반 금융채 기준)를 의미
- 4) 평균대출금리는 금융자금대출(기업+가계+공공및기타)를 의미
- 5)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대출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보증료를 은행이 분납 후취하는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의미
- 6) 실제 비교공시할 때의 연월은 해당 공시 연월의 금리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연월의 금리도 은행 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공시
- 7) 은행별 특수성은 주요 금리 및 금리차 변동요인 등에 대해 500자 이내로 자유 작성

문 의 처

02)6788-5104